

검단신도시 AB3-2블록 **에미지 퍼스트포레**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귀하의 검단신도시 에미지 퍼스트포레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사전서류 검수기간을 통해 자격확인을 진행하오니, 기간내 반드시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예비 당첨자 서류 제출 예약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을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당첨자		예비 당첨자	
서류제출 예약기간	4월 27일(화) ~ 5월 1일(토)	서류제출 예약기간	5월 16일(일) ~ 5월 18일(화)
서류제출 시간	5월 2일(일) ~ 5월 7일(금)	서류제출 시간	5월 19일(수) ~ 5월 21일(금)
	홈페이지 예약		홈페이지 예약
	건본주택 (10:00 ~ 16:00)		건본주택 (10:00 ~ 16:00)

■ 공통사항 및 유의사항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9)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상기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상세"로 발급 되어야 함
- ※ 사전 서류 검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서류	발급기준	체크사항
기본서류 (필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주택공급신청용(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본인에 한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가능
	신분증 사본	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신규발급분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성명 및 주민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발급일, 주소변동사항, 전입일, 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배우자 확인 등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본인 건본주택 비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증빙서류 제출
당첨자 추가서류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당사 양식]건본주택 비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1년이상 부양가족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 시, 기간 확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및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부적격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당점 소명각서	[당사 양식]건본주택 비치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